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올바른치킨』 정보공개서

올바른치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올바른치킨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5149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12.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18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42, 1층(신림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6104-004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가맹본부의 이메일 주소	wjdqja211@naver.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 서류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올바른치킨	영업표지	올바른치킨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42, 1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4.11.11	이정범	02-6104-0040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723-57-0088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올바른치킨]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올바른치킨	
상 호	올바른치킨_____점	지역명 또는 건물명을 참고

상표 (서비스표)	 올바른치킨	출원번호(일자) 4020250191971(2025.10.17)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44,181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비고
올바른치킨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정범	대표	2024. 11. 11~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4.12.31.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올바른치킨]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올바른치킨	가맹점 사용	출원일자: 2025.10.17	출원번호 : 4020250191971	이정범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올바른치킨] 가맹사업 현황

1. [올바른치킨]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 11. 11.)

2. [올바른치킨]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올바른치킨	올바른치킨	이정범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42, 1층

3. [올바른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올바른치킨	양식	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올바른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1	-	1
서울	-	-	-	-	-	-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세종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올바른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6. [올바른치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바로 전 3개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 [올바른치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올바른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올바른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	평균 영업기간
-	-	-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올바른치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직전 연도에 [올바른치킨]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	-	-	-	-	-
광고	-	-	-	-	-	-
판촉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기업팀	서울 중구 을지로 79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해당 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 등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올바른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올바른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발급)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발급)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00				(예외조건)
가맹비	1,100,000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갑"이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진행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1. "갑"이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사용허락(40%) 2. 영업지역 부여(20%) 3.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20%) 4.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20%)

2)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0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대금 미납 및 파손, 로열티 등 가맹금 미납, 계약 위반에 따른 당사의 손해배상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갑”이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담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1,100,000
가맹비	1,100,000
교육비	-
보증금	-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	38,800,000	-	-	-	33㎡(10평)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미정)	16,500,000	1,650,000	-	-	별도 계약 시 개별약정 우선
익스테리어	협력업체(미정)	2,500,000	-	계약시 또는 견적시	공사 전 계약 취소	
장비 및 집기	협력업체(미정)	16,500,000	1,650,000	계약시 또는 견적시	설치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	협력업체(미정)	3,300,000	-	물품 공급 전	상품 공급 전 계약 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및 내부오피션공사, 별도공사, 각종 인허가비용 등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시공매뉴얼 및 도면설계, 관리감독 등의 비용으로 평당 삼십삼만원(330,000원/부가세포함)을 착공 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음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별도 금액	<p>가. 별도공사: 카운터 설치, 테라스, 외부닥트, 냉난방, 외부샷시, 전기승합, 정화조, 화장실, 점포외부 공사, 기등 공사, 소방, 가스시설, 음향기기 등</p> <p>나. 기타공사: 방수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기본 방수 외 추가 진행 시), 조경공사</p> <p>다. 같은 평수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정도, 구조 등에 따라 상기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p> <p>라. 임대보증금, 권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타 인허가 비용</p>
--------------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p>(1) 당사는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p> <p>(2)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p> <p>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p>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올바른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인테리어	<p>기본: 목공사, 도장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조명공사, 유리공사, 수장공사, 철거, 현장정리정돈/청소, 등</p> <p>별도 (추가): 테라스, 현장정리정돈/청소, 전기증설, 도시가스공사, 방염공사, 가구공사, 인.허가비용, 공과잡비, 기타 잡공사 등</p>	별도 계약	협력업체(미정)
익스테리어	간판 등	별도 계약	협력업체(미정)

장비 및 집기	냉장고 등	별도 계약	협력업체(미정)
---------	-------	-------	----------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POS	협력업체 (미정)	협력업체와 협의	협력업체와 협의	-	-	-
물품대금	협력업체 (미정)	선불	선불	반환 안됨	-	-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15만원(vat별도)	익월 10일	후납으로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1일~말일 기준 후납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분담금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광고·판촉 행사 진행 후 반환 안됨	광고·판촉 행사진행비용소요	분담 기준은 광고·판촉행사별 성격에 따라 상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실시전 통지	교육 실시 전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강사비,재료비, 식대, 교통비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정)	VII-1 참조	교체 시	-	-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정)	협의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정함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채무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없음

- ▶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습니다.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가맹본부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필요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시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올바른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의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합니다 또한 귀하는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계약의 종료 후 귀하가 철거 내지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철거 내지 제거의무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귀하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올바른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 ▶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귀하가 [올바른치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올바른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당사가 [올바른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3)의 메뉴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에 명기된 사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명	제한내용	위반시 책임	비고
영업지역외의 소비자	'올바른치킨'의 모든 상품	유통(서비스) 금지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경쟁업체	'올바른치킨'의 모든 상품 및 원부자재	유통(서비스) 금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 표에 명시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협의 후 결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권장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한번 협의된 가격은 당사와의 별도협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메뉴명/상품명	권장 가격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기준 일시
별첨 참조		판매가격 변경시 변경가격을 우편(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	2025.11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

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업종	올바른치킨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200m 단위로 설정 (점포 중심 원형 상권,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특수상권의 경우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올바른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
대리점	-	-	-
일반소매점	-	-	-
기타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올바른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올바른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해지사유 및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귀하가 물품공급 중단사유(아래 ▶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
2.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당사와 약정한 개점 전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호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품공급 중단 사유

7일 전 서면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귀하가 제4조[영업표지 등 사용권의 부여]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표지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귀하가 제6조[영업지역의 설정]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승인없이 가맹점의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한 경우 3. 귀하가 제9조[가맹금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귀하가 제11조[대금의 납부 및 로열티]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제12조[광고 및 판촉활동]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귀하가 제13조[보고의무]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7. 귀하가 제14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8. 귀하가 제15조[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귀하가 제16조[물품 등의 하자통지와 반품]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귀하가 제19조[감독 및 시정권]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귀하가 제20조[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경영지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2. 귀하가 제21조[교육 및 훈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받지 아니한 경우 13. 귀하가 제22조[점포의 설비]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14. 귀하가 제23조[장비, 비품, 집기 등의 설치 및 유지]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15. 귀하가 제24조[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16. 귀하가 제25조[영업양도], 제26조[영업상속]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17. 귀하가 본 계약의 특약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18.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준하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각호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즉시 해지 사유와 동일	제18조 제2항 각호

(2)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

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p>제28조 제2항 각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가 파산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당사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이 곤란한 경우 	<p>제28조 제3항 각호</p>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와 귀하는 상호 합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3.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36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 이행보증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할 경우 신규계약 가맹금 정책에 준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교육비 지급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승인요청→ 당사자 확인 후 승인	

업무 위탁	불가능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국내 전 지역에서 가맹사업자가 [올바른치킨]와 같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혼란 및 가맹본부의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1년]동안 계약상의 동일한 점포소재지에서 당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치킨 업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을 허가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올바른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00 ~ 01:00	주 6일 이상 영업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부 가맹사업팀	-
각종설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계장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원부자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원부자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서비스 및 레시피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및 레시피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올바른치킨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75%	25%		
	가맹점모집광고	100%	-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50%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전제 적용
	증정행사	50%	50%		
	팸플렛 등 제작	50%	50%		
	기타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판촉활동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서, 계약서, POS 등의 공지사항 등 당사가 제공 또는 전달, 게시

한 정보를 외부(온라인 포함)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 귀하는 가맹계약으로부터 알게된 당사의 고유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하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 노하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여서는 안됩니다.
- ▶ 귀하는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직원 등에게도 영업 비밀을 제공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교육시키고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30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14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을"이 29조 제1항[계약의 종료]을 위반한 경우는 잔여기간 1일당 금삼십만원(₩ 300,000원)의 위약벌을 부담한다.
- ⑤ "을"이 제15조 2항[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자점매입 금지]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자점매입한 금액 ×3 의 금액 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며, 자점 매입 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위약벌을 부담한다.
- ⑥ "갑" 또는 "을"의 임의로 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 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 남은 잔여 계약 개월 수 X 200만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상담 → 담당자 배정	D-47	
가맹희망자 미팅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계약체결	D-30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D-2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 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인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	-	-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귀하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올바른치킨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서비스 이론 및 매뉴얼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	신규교육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 및 각종 매뉴얼 변경, 매장 운영 개선 등 기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사전공지	비정기적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올바른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약 7일 (단, 숙달되었을 경우 본사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
특별교육	사전 공지	사전 공지	비정기적

3. 교육·훈련의 주체

▶ 모든 교육에는 귀하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타인을 대리로 교육에 참석시킬 수 없으며, 귀하는 당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귀하는 최소 3일 전에 당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영업개시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신규 및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계약서 제18조 물품공급의 중단, 가맹계약서 제28조 가맹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대학동본점	서울특별시 대학길 42,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개월	1개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4,18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연간 평균매출액을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거로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별지 2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별지 3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지 4 원부자재 품목
- 별지 5 메뉴

[별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2]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3] 원부자재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4] 메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